

첨부1

우대사항 가점표

구분	관련 법률	대상자		전형별 가점여부		가산점
				서류	면접	
보훈	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	- 독립유공자(애국지사) -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- 고엽제후유의증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 - 재일학도의용군 4.19혁명부상자 - 특별공로상이자·공로자	본인	○	○	10점
		- 순국선열, 등록이전사망 독립유공자(애국지사) -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4.19혁명사망자 - 특별공로순직자	가족, 유족	○	○	5점
		지정취업 대상자	유족	○	○	10점
				○	○	5점
	5.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0조	5.18민주화 부상자 5.18민주화 희생자	본인	○	○	10점
			가족, 유족	○	○	5점
		5.18민주화 사망자 및 행불자	가족, 유족	○	○	10점
		지정취업 대상자		○	○	5점
	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	- 특수임무수행자 - 특수임무공로자	본인	○	○	10점
			가족, 유족	○	○	5점
		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	가족, 유족	○	○	10점
	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	고엽제후유의증환자	본인	○	○	10점
			유족	○	○	5점
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	○	○	10점
		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	○	○	5점
장애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	관련 증빙에 의한 등록 장애인(중증/경증)	본인	○	○	5점
비수도권인재	최종 출신학교(대학원 제외)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자		본인	○	-	1점
재단 근무경력자	재단에서 기간제 직원(일반사무직)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*재단과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우대		본인	○	-	2점

*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(보훈장애 가점의 경우 서류전형 이외의 전형시에는 전형별 만점대비 40%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)

** 보훈장애 관련 가점은 중복하여 가산되지 아니하며,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가산